

발송번호: 9-5-2023-061214623

발송일자: 2023.07.05.

제출기일: 2023.09.05.

수신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20길 10, 3층

(역삼동, 쓰리엠타워)(특허법인메이저)

특허법인메이저[박종욱] 귀하(귀중)

06235

특 허 청 의견제출통지서

출 원 인 성 명 주식회사엠에스지 (특허고객번호: 120150264542)
주 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4길 4, 402호(방배동, 대진빌딩)
대 리 인 명 칭 특허법인메이저
주 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20길 10, 3층(역삼동,
쓰리엠타워)(특허법인메이저)
지정된변리사 박종욱 외 1명

출 원 번 호 40-2022-0061871
상 품 류 제 44 류

1. 이 출원에 대한 심사결과 아래와 같은 거절이유가 있어 이를 통지하오니 의견이 있거나 보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상기 제출기일까지 의견서 또는 보정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관계법령 : 상표법 제54조 및 제55조,
의견서 : 상표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보정서 : 상표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

2. 위 제출기일에 대하여 매회 1월 단위로 총 4회까지 연장을 신청할 수 있으며, 이 신청에 대하여 별도의 기간연장승인통지는 하지 않습니다. 기간연장은 2회 이상을 한꺼번에 신청할 수 있으며, 기간연장신청서는 지정(연장)기간 내에 제출해야 합니다.

거 절 이 유

이 상표등록출원 상표는 다음 거절이유가 있어 통지합니다.

- 상표법 제33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식별력이 없는 표장에 해당합니다.
- 상표법 제33조 제1항 제7호에 따른 식별력이 없는 표장에 해당합니다.

아래 거절이유의 상세 내용을 참고하시어 의견이 있거나 보정이 필요한 경우 상기 제출기일까지 의견(답변, 소명)서 또는 보정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 상표견본이미지

Doctors

닥터스피부과의원

(※ 본 통지서의 상표권본 이미지는 출원서에 첨부된 상표권본과 다소 상이할 수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거절이유1] 상표법 제33조 제1항 제3호 및 제7호

이 출원상표는 ‘의사’라는 뜻을 가진 ‘Doctors’와 ‘Doctors’의 한글 음역인 ‘닥터스’, ‘피부에 관한 병을 연구하는 의료 분야’를 뜻하는 ‘피부과’로 구성된 표장으로서, 전체적으로 ‘피부질환 진료를 하는 곳’ 정도로 관념되므로 지정상품의 성질표시(제공내용, 제공장소)표시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이들의 결합으로 새로운 관념이나 식별력을 형성하는 것도 아니어서, 이를 지정상품에 사용할 경우 일반 수요자가 누구의 업무와 관련된 상품을 표시하는 상표인지를 식별할 수 없는 표시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지정상품: 전부. 끝.

2023.07.05.

특허청

상표디자인심사국

심사관 윤석영

 

1. 이 출원상표의 지정상품과 타인의 선출원·선등록 상표의 지정상품에 대한 동일·유사 여부는 유사상품 심사기준(특허청 예규)을 참고하여 상품의 속성 및 거래실정 등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합니다.

2. 타인의 선출원·선등록 상표의 상세한 내용은 「KIPRIS 특허정보검색서비스(<http://www.kipris.or.kr/>)」에서 무료로 확인 할 수 있습니다.

※ 위에서 안내한 후속 절차 또는 신청 서식 등에 관한 사항은 특허고객상담센터 ☎1544-8080로, 이 통지서 내용에 대한 사항은 특허청 서비스상표심사과 ☎042-481-3461(대표번호)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특허로(www.patent.go.kr) 또는 특허청(www.kipo.go.kr) 홈페이지를 방문하시면 심사 진행상황, 서류 제출 및 절차에 관한 보다 많은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특허청) 우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4동 (문산동, 정부대전청사)